

기자단설명회(12.9)

# WTO/DDA 홍콩각료회의 동향 및 대책

2005. 12

농 립 부

## 목 차

I. 제6차 WTO 각료회의의 참가 계획 .....	1
II. WTO/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.....	3
III. NGO 집회·시위 관련 사항 .....	8
1. 홍콩당국 및 현지의 분위기 .....	8
2. 홍콩정부 준비상황 .....	9
<참고 1> 협상쟁점별 대응방향 .....	10
<참고 2> Falconer 농업위 의장 보고서 요지 .....	12

# I. 제6차 WTO 각료회의 참가 계획

## 1. 제6차 WTO 각료회의 개요

□ 일시·장소 : 2005.12.13(화) ~ 18(일), 홍콩 컨벤션 센터

### □ 참가국

- 149개 회원국 각료, 옵저버 국가 및 국제기구 참석
- WTO 사무총장, 일반이사회 의장 등  
- UN 사무총장 개막연설 예정

### □ 대표단

- 농림부 : 장관, 농업통상정책관, 국제농업국장, 농정국장, 제네바 농무관 등 13명
- 외통부 : 통상교섭본부장, 이재길 DDA협상대사 등 17명
- 주제네바대표부 : 최혁 대사 등 13명
- 기타부처 : 해양부 차관보, 재정경제부 국장, 산업자원부 심의관, 복지부, 정통부 등 관계자
- 자문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

### □ 국회의원

- 조일현, 안병엽, 정의용(열린우리당), 박승환, 김영덕(한나라당), 신중식(민주당), 강기갑(민노당) 등 7명

### □ 기자단

- 8개 언론사(9명), 4개 방송사(10명), 3개 농업전문지(4명)

### □ 농민단체 : 총 1,400여명(잠정)

- 전농 900명, 한농연 168명, 전여농 104명, 카농 110명, 기타 (WTO국민연대, 쌀전업농, 한여농 등) 53명, 농협(회장 포함) 48명 등

## 2. 회의 일정

□ 12.13(화) 15:00 개막식, 12.18(일) 18:00 폐막식

□ 12.14(수)~18(일) 각료회의

- 각국 각료 기조연설
- 최빈개도국 문제 (면화, 바나나 문제)
- 신규가입국

※ 회의기간중 각료선언문 채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비공식 회의 수시 개최

※ G10, G33 등 유사입장국 각료회의, 기타국과 양자협약

## 3. 대표단 활동계획

□ 농업분야 회의

- 소규모 그룹협의, 전체회의 참가
- G10, G33 등 유사입장국 공조회의 참가

□ 주요국과 양자협약

- 대만, WFP, 미국이 양자협약 요청 (구체일정 추후확정)
- 필요에 따라 EU, 중국, 인도 등 주요국과 양자협약 추진

□ 언론, 국회의원, 농민단체 설명회 실시

- 일일 현지 언론 브리핑 실시
- 농민단체 대표자에게 협상상황 일일 브리핑 실시
- 국회대표단에게 협상 상황 수시 설명

## II. WTO/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

### 1. 협상경과

□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.11월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 출범

※ 당초 협상일정 : ① 세부원칙(Modality) 수립('03.3) ② 이행계획서 제출 ('03.9, Cancun 각료회의) ③ 협상완료('04말)

○ 2003.3월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협상 세부원칙 (Modality)을 확정하려 했으나 합의 실패

○ 20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 노력 실패

□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2004.7월말까지 우선 기본 골격(Framework)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

□ 2004.8.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

○ 당초 협상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,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.12월 홍콩에서 개최기로 결정

□ '05.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며, 10월이후 미국, EU, G10, G20, ACP 등 주요 그룹 및 주요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 본격화

□ Falconer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홍콩 각료회의를 위한 농업협상 의장 보고서 초안(Draft report)을 배포(2005.11.22)

## 2. 최근 협상동향

- 최근 '05.12월 홍콩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Lamy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합의문 1차 초안 제시(11.26)
  - 동 합의문 초안은 농업·비농산물·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그룹 의장 보고서를 부속서로 담고 있음
    - 특히, 농업·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합의 일정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일정을 홍콩각료회의 협상과제로 제시
- Lamy 사무총장은 12.1 각료회의 합의문 1차 초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2차 초안을 제시
  - 관세감축구간대 4개, 국내보조감축구간대 3개에 의견수렴이 있으며, 개도국 특별품목(SP)·특별긴급관세(SSM)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명시 (농업협상 의장 보고서는 그대로 첨부)
  - 일반이사회에서 채택(12.2)
- 최근까지 주요국 및 그룹들이 제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
- EU, G10(한국 포함)은 미국이 과도한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, 미국, 호주 등은 EU와 G10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비판

## <WTO/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내용>

		E U		미 국	G20	G10	ACP
		10.13 제안	10.28 제안				
시 장 접 근	구간경계	(선진국) 30-60-90 (개도국) 40-80-120	(선진국) 30-60-90 (개도국) <b>30-80-130</b>	20-40-60	(선진국) 20-50-75 (개도국) 30-80-130	(선진국) 20-50-70 (개도국) 30-70-100	(선진국) 20-50-80 (개도국) 50-100-150
	관세 감축률	(선진국) 20-30-40-50  (개도국) 13.3-20-26.6-33.3	(선진국) <b>35-45-50-60</b> <i>*최하위(20~45%)</i> (개도국) <b>25-30-35-40</b> <i>*최하위(10~40%)</i>	60-70-80-90	(선진국) 45-55-65-75  (개도국) 25-30-35-40	(예시1) 27-31-37-45  (예시2) 32±7-36±8-42±9-5 0±10	(선진국) 23-30-35-42  (개도국) 15-20-25-30
	관세상한	(선진국)100%	(선진국)100% (개도국)150%	(선진국)75% (개도국) X%	(선진국)100% (개도국)150%	반대	반대
	민감품목	8%	8%(축소가능) 관세감축은 1/3 ~ 2/3 수준	1%	(선진국) 1% (개도국)1.5%	일정 비율 (10~15%)	-
	특별품목	제한적 인정	제한적 인정	한시적 인정	특별품목 지지	-	관세감축 면제 TRQ 증량 면제
	지리적 표시	-	모든 농산물 대상 차별적 표시 보호	-	-	-	-
국 내 보 조	AMS	EU·일본 70%감축 미국 60% 기타 -	EU·일본 70%감축 미국 60% 기타 50%	EU·일본 83%감축 미국 60% 기타 37%	EU·일본 80%감축 미국 70% 기타 60%	EU - 일본·미국 - 기타 -	
	무역왜곡 보조총액	-	1구간 70%감축 2구간 60% 3구간 50%	EU 75%감축 미·일 53% 기타 31%	EU 80%감축 미·일 75% 기타 70%	-	
	de minimis	최소 65% 감축	선진국 80% 감축	50% 감축	AMS없는 개도국 감축면제	-	
	Blue Box	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	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	농업총생산액의 2.5%(상한)	Blue Box 제한	-	
	Green Box	현행 규정 유지	현행 규정 유지	현행 규정 유지	개도국 관련규정 완화	현행 규정 유지	

※ 수출보조 : 수출보조금 철폐 (미국은 2010년 까지 철폐, EU는 품목별 차등 철폐 주장)

### 3. 홍콩 각료회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

#### 가. 전망

-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각료들이 농업, 비농산물, 서비스 등 DDA 협상 전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일정 등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
- 지난 12.2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각료선언문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홍콩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
-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농업,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타결 시한, 국별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결정할 전망
- ※ 그간의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감축, 민감품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 형성
- 이번 회의기간중 공식회의, 비공식회의, 각 협상 그룹별 공조회의, 각종 양자협약이 개최될 예정
- 공식회의에서는 각국 각료들이 다자무역체제와 DDA 협상에 대해 기초연설을 하며,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
- DDA 협상 관련 실제 중요한 회의는 농업, 비농산물, 서비스 등 분야별 각료회의 및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주도하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(Green Room회의)임.(구체일정 현재 미확정)
- ※ 한편, 미국, EU, 브라질, 인도 등 주요 4개국(QUAD)간 회의도 비공식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, G10, G20, G33 등 주요협상 그룹별 회의도 개최 예정

## 나. 대응방향

- 홍콩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, 민감품목 등 농업협상이 갑작스럽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, 우리로서는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인 대응 필요
  -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
  - 특히, 관세감축폭 최소화, 민감품목 확대, 관세상한 설정반대, 특별품목 확보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협상국면에 따라 전략적 대응
-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
- DDA 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
  - 협상 주요단계마다 농업인, 농민단체, 언론계, 학계 등에 대해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에 보고

### Ⅲ. NGO 집회·시위 관련 참고사항

#### 1. 홍콩당국 및 현지의 분위기

- 홍콩경찰 등 홍콩정부 당국에서는 11.29 전농 등 농민단체 선발대의 홍콩 기자회견시 천명한 평화적 시위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홍콩경찰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평화시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임.
- 주홍콩총영사관에서도 합법적인 평화시위를 전제로 농민단체 등이 원할 경우 홍콩경찰과의 연락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영사관과도 사전 연락할 것을 희망함
  - 홍콩은 금년초 '대장금' 프로그램 방영이후 한류 분위기가 고양되고 홍콩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감정이 크게 높아진 상황
  - WTO 회의기간 중 한국농민에 의한 폭력시위 발생시 한국에 대한 감정 악화 및 홍콩내 한국 교민의 위상저하 등이 예상
  - 우리 시위대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경우 우리 농민 및 한국 농업의 실상에 대해 홍콩시민들에게 더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
- 홍콩의 집회시위 관련법(공공질서법)은 한국의 집시법보다 대체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점에 주의 필요
  - 특히, 불법시위자들은 체증후 대부분 현장에서 검거하며, 우리나라와 달리 신분증 제시 거부시 6개월 이하 징역

## 2. 홍콩정부 준비상황

### □ 홍콩 경찰

- 평화시위는 적극 보호하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
- 회의기간 중 완차이 회의장 주변에 경찰 9,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, 금년초부터 기동대 전체에 대한 특별훈련 실시
- 폭력시위 우려자에 대해서는 입국거부 또는 공항에서부터 밀착 감시 예정
- 한국어를 포함한 통역요원 확보(홍콩 WTO 준비 사무국(35명) 및 법원(8명)에서 인력 지원 예정)
- 준법시위 유도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배포·방송할 5개국 언어(한국어 포함)로 된 홍보전단지 및 방송문안 준비

### □ 이민국

- 회의기간 전후 한국인 입국시 상세한 질문을 위하여 통역요원(15명) 사전 확보

### □ 도로국

- 보도블럭이 시위중 투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블럭을 강력 접착제로 고정

### □ WTO 준비 사무국

- 이민국, 경찰, 병원 등에서 한국어 통역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 유급 통역요원 35명 선발

## 협상쟁점별 대응입장

### □ 관세감축율

- 미국 등 일부 수출국들의 과도한 관세감축 요구가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
  - 관세감축율 최소화를 위해 G10 공조하에 대응하되, EU의 관세감축폭 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응
  - 불가피한 경우, 민감품목·특별품목에 대한 대우 등 우리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
  - G10 차원 또는 우리 독자적인 추가 제안을 제시할 지 여부는 협상 동향을 보아가며 판단하되, 관세감축율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낮추는 협상 전략 구사

### □ 민감품목

- 민감품목 범위와 대우에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추진
  - 민감품목의 범위와 관련, 우리의 주요 농산물이 민감품목에 포함되고 TRQ 증량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
  - TRQ 증량 기준은 UR 양허 기준을 주장하되, 협상 동향을 감안 최근 소비량 등 여타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

### □ 관세상한

- G10 공조를 통해 관세상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ACP·여타 국가 등 관세상한 반대세력 규합 노력 경주하되, 수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세상한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## □ 개도국 특별품목(SP) 및 특별긴급수입제한(SSM)

- G33과 공조활동을 통해 대응하되, 향후 논의과정에서 SP에 대한 대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
  - 특별품목 범위는 최소한 우리 핵심 농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
- SSM은 향후 우리가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

## □ 국내보조 감축폭 등

- 협상동향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하되, 시장접근 분야의 논의 수준과 연계하여 대응
- 우리의 국내보조 정책이 허용보조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응

## □ 수출경쟁

- 수출보조 철폐시기, 수출국영무역 기업과 수출신용 규율 관련, 수출입국간 타 분야와 균형된 협상결과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대응
- 식량원조와 관련, 수출보조의 우회를 막기 위해 원조에 대한 일부 규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, 지나친 규율강화로 정당한 식량원조까지 제약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

## Falconer 농업위 의장 보고서 요지

### 1. 의장 평가

- 동 보고서 초안(Draft report)은 의장 자신의 책임하에 지금까지 논의결과에 대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(Summary report)한 것임
- 미 합의 쟁점은 대립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의견차이가 좁혀진 쟁점은 접근 수준을 제시
- 동 보고서는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으며,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, 향후 동 보고서를 WTO 무역협상위원회 (TNC)에 보고할 계획을 제시

### 2. 분야별 요지

#### 가. 시장접근 분야

##### □ 구간별 관세감축

- 구간수는 4개 구간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
- 구간경계 및 감축율(일반품목 추정)

구간	관세구간 경계 및 범위	관세구간별 감축율
1	0~20/30%이하	20~65%
2	20/30~40/60%이하	30~75%
3	40/60~60/90%이하	35~85%
4	60/90초과	42~90%

- 구간내 관세감축은 단순선형감축방식으로 상당수준 의견 접근
- 일부 국가들은 구간내 신축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, 구간내 신축성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협상해야 할 필요

- 관세상한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(Some members)들은 관세상한의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, 다른 국가들은 75~100%의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

## □ 민감품목

- 민감품목의 수는 각국 전체 농산물 품목중 최소 1%, 최대 15%로 대립하여 의견차이를 좁힐 필요
- 다만,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구체 논의가 없어 추가 논의 필요

## □ 개도국 특별품목(Special Products)

- 개도국은 특별품목수의 지정에 대해 각국 전체 품목중 20%를 주장하나, 선진국·수출국들은 반대 입장
  - 현재까지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특별품목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며, 특별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수준, 품목수 지정,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제안이 필요
- 대우와 관련, 개도국은 시장접근 약속(관세감축 및 TRQ 증량)에서 제외를 주장하나, 선진국·수출국들은 동 품목의 시장접근 개방 정도를 고려하면서 신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

## □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(SSM)

- 개도국에 대해서 SSM의 발동 필요성과 발동기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가 없는 상태(다만, 수입증가 물량기준 발동방식의 세부기준은 미합의)
  - SSM의 가격기준 발동에는 의견차가 큰 상태
- SSM 대상품목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품목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대립

## □ 개도국 우대(S&D)

- 관세구간수 및 경계에 대해서는 추가논의 필요
  - 개도국은 선진국과 차별 필요성 제기
- 관세구간내 감축율과 관련하여 선진국 감축율 대비 2/3수준을 검토하자는 상당한 의견이 있음
- 개도국 관세상한 문제와 관련, 150%의 상한을 주장하는 입장과 개도국에 대해서 관세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주장이 있음
- 개도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축성을 부여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, 그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 추가 논의 필요

## □ 기타쟁점

- 저율관세 철폐 및 경사관세 문제는 의견 대립
- SSG 철폐문제에 대해서는 수입국들이 반대하고 있음
-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무관세 및 저율관세를 철폐토록 한 기본골격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 논의진전이 없는 상황

## 나. 국내보조분야

### □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관련 제안

#### <선진국>

구간	구간범위	해당국가	감축율
1	0~100억불	기타 선진국	31~70%
2	100~600억불	미국·일본	53~75%
3	600억불 이상	EU	70~80%

<개도국> 최하위 구간 또는 별도 구간으로 배치

## □ AMS 감축 관련 제안

구간	구간범위	해당국가	감축율
1	0~120/150억불	기타 선진국	37~60%
2	120/150~250억불	미국	60~70%
3	250억불 이상	EU·일본	70~80%

## □ 품목특정 AMS 상한

- 상한 설정의 기준기간에 대하여 1995~2000년, 1999~2001년 등의 기준을 정하자는 제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나, 개도국 우대 등을 포함하여 적절히 해결될 필요

## □ De-minimis 감축

- 선진국에 대해서는 50~80%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주장 제시
- 개도국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며, 감축면제 또는 AMS가 없는 개도국만 면제하자는 주장이 있음
  - 어떤 경우든지 개도국 적용 감축율은 선진국의  $\frac{2}{3}$  이하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음

## □ 블루박스(Blue Box) 기준

- 기본골격보다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, 구체적 방법은 아직 미결된 상황
- 기본골격에서 블루박스 상한을 농업총생산액의 5%로 정한 것을 2.5%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, 신규 블루박스 제한에 더 중점을 두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과 신규 블루박스와 기존 블루박스 모두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시됨

## □ 그린박스(Green Box) 기준

- 그린박스 기준의 재검토 및 명료화 작업의 뚜렷한 성과는 없음
- 기존 그린박스 기준의 수정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기준 재검토가 진행중인 개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
-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역왜곡적이지 않으면서 개도국의 농업현실에 맞게 그린박스를 조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

## 다. 수출경쟁분야

### □ 수출보조 철폐 시한

- 수출보조를 조기에 철폐하자는 주장과 품목별로 차등 철폐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으나, 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황

### □ 수출신용, 수출국영무역기업, 식량원조

-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,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황